

이용계약

(이용계약내용)

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계약목적은 센터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규정과 급여제공 사항에 대한 내용 및 비용을 명시하여 상호 발생 할 수 있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.
-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,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.
-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 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하며,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후 재등급심사에서 등급 변동 없이 연장된 경우 및 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할 수 있다. 단, 수급자가 재등급심사에서 장기요양등급 등외의 판정을 받을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까지, 수급자가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그 기간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.
- 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수용하며, 계약해지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까지 정산한 이용비용을 센터 이용료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기타비용
 -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 -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
- ⑦ 계약의 해제
 -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⑧ 신원인수인(계약당사자)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계약자는 신원인수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,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

-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
이용료 및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

(이용비용 및 수납)

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가에 명시된 각 등급별 한도액으로 하며,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장기요양급여수가가 변동 공시되면 별도의 통보 및 계약서의 재작성 없이 변동된 수가를 즉시 반영한다. 월별 급여제공 비용중 본인부담금은 보호자로부터 수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납한다.

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이용료

-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: 방문간호
-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은 매년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등급별 한도액에서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.

② 본인부담금

- 일반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소득/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%
- 의료급여수급권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무료

(서비스내용)

- ① 방문간호 :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, 진료의보조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
구분	서비스 내용
기본관리	건강상태 확인,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, 지남력 평가 등
교육 및 상담	통증관리, 식이관리, 감염관리, 구강관리, 투약관리, 보호자 교육 등
신체훈련	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, 낙상예방, 운동교육 등
의뢰 및 검사	의료기관 의뢰, 장기요양기관 연계, 기초검사 등
기타	행동변화, 응급상황 대처 등,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.

② 방문간호 서비스중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방문간호 지시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방문간호 지시서 변경을 요청하여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,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③ 방문간호 서비스중 응급상황 발생시 보호자와의 협력하여 응급상황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며, 1차적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하도록 한다. 단, 보호자의 부재시 응급조치를 시행한후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한다.

④ 방문간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정간호사, 방문의사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보호자에게 제안 할 수 있으며,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.

⑤ 수급자의 감염병 발생시 또는 임종직전의 경우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여부는 보호자와 협의한다.

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범위

(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)

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(이용자)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.

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, 모든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-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
-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(상해보험 청구)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
 -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.
 -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.
- ④ 수급자(이용자)는 센터와 방문간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-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아니 한다.